

의안번호	제 270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2월 일 (제 305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
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12월 8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2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일부 수정

1) 벽지(해당란 삭제)

등급	시·군	구, 읍·면·동, 리	기관명	삭제사유
라	음성군	음성읍 삼생리	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	2012.3.1.남신초등학교로 통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11. 10. 28. ~ 11. 16.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등급란 “라” 중 시·군란의 “음성군”란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] <input type="checkbox"/> 벽지				[별표] <input type="checkbox"/> 벽지			
등급	시·군	구, 읍·면·동, 리	기 관 명	등급	시·군	구, 읍·면·동, 리	기 관 명
라	울성군	울성읍 삼생리	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	라	<삭제>	<삭제>	<삭제>

관계법령 발취

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1. 8.29] [대통령령 제23099호, 2011. 8.29, 일부개정]

제12조(특수지근무수당)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·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(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)을 지급한다. 다만, 경비교도·경찰대학생·경찰간부후보생·소방간부후보생·사관생도·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3.31>

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.

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,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, 국립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,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조례로,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,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,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.

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1. 8.29] [대통령령 제23100호, 2011. 8.29, 일부개정]

제12조(특수지근무수당)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·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, 갑지는 월 5만원, 을지는 월 4만원,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1985.9.9, 1993.1.15, 1995.1.28, 2000.1.28, 2001.1.29, 2004.5.4, 2005.1.7>

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[별표 10]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,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[별표 10]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 <개정 1985.9.9, 1998.6.1, 2000.1.28, 2008.2.29, 2008.9.10>

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85.9.9, 1991.1.28, 1991.6.27, 2001.1.29, 2005.1.7, 2008.9.10>

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·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. <신설 1999.1.21, 2001.1.29, 2008.2.29, 2008.9.10>